

「평창군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5. 10. 30(금) 평창군수(주민생활지원과장)

나. 회부일자 : 2015. 11. 20(금)

다. 상정일자 : 2015. 12. 7(월) 제215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
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)

○ 상위법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이용섭)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새주소 시행에 따른 주소 수정 및 법령 위반에 해당 되는 조항을 수정, 삭제하는 것으로

○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평창군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”를 “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·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노인복지회관은 평창군 용평면 갈정지길 6(구 주소 : 용평면 장평리 380번지)에 둔다.

제6조제5항 중 “원상을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완료와 동시에 평창군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”를 “원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